

2019년 개정판



꼼꼼한 제도개선 깐깐한 사전관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과거에는 ‘사후표본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따라 실내용 건축자재는 사용·공급하기 전에 환경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관리물질

-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 7종입니다.

※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관리물질) 품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 3종입니다.

(단위 : mg/m² · h)

구분	오염물질 종류	품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				2.0 이하
2. 페인트				2.5 이하
3. 실란트				1.5 이하
4. 퍼티				20.0 이하
5. 벽지				4.0 이하
6. 바닥재				0.8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4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 실란트의 측정단위: mg/m·h로 한다.

참 고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하여 확인 받은 건축자재(‘18.12 기준)

- 방출시험 확인제품

(단위 : 개)

바닥재	벽지	실란트	접착제	퍼티	페인트	총합계
71	32	96	60	22	473	754

- 파생제품

(단위 : 개)

바닥재	벽지	실란트	접착제	퍼티	페인트	총합계
5	27	39	27	3	39	140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보수를 포함) 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실내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전적합확인제도

주요 내용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 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확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확인절차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건축자재의 표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자재 제조 및 수입업자

-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자재 구매자

-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통해 기준 이내의 건축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에서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기관 신청, 지정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 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42호, 2018.11.23)에서 규정 합니다.



적용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입니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

위반시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건축자재 제조 및 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공급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자재의 표지

실내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건축자재 시험기관을 통하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결과 기준 이내의 건축자재는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 확인시험을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사전적합확인 뒤에도 사후관리! 2중으로 확인해 더욱 안전합니다



건강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합제품 사용여부 확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가 실내 사용 적합제품(실내마크)을 사용하여 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 (실내재료마감표, 건축자재 시험확인서, 현장점검) 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불법제품 유통여부 확인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 건축자재의 표지(실내마크) 부착여부 확인 및 사후 확인시험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건축자재는 회수조치 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및 건축자재의 종류

구분	용 도	구분	용 도
벽지	벽이나 천정을 도배하는데 쓰이는 종이를 말하며, 종이 외에 각종 섬유, 플라스틱 합성품 등이 있다.	페인트	안료(顏料)를 전색제 또는 결합제와 섞어서 만든 유색의 도료를 말하며, 유성페인트, 에나멜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이 있다.
바닥재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를 가리키며, 목재, 돌, 타일 등이 있다.	실란트	창틀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하며, 기밀 또는 수밀 기능을 하고, 부재 상호간의 신축, 진동, 변형을 흡수 완화한다. 고무상의 물질, 연질, 고점도의 액상 등이 있다.
접착제	두 물체를 서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며, 녹말풀, 고무풀, 요소수지, 폴리아세트산비닐계와 같은 고분자 접착제 등이 있다.	퍼티	도장 바탕의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보수하거나 창호에 판유리를 끌 때 사용하는 건축재료를 말하며, 유지나 수지에 무기질의 총전제 등을 첨가한 제품이다.
목질 판상 제품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완제품으로, 불박이가구, 신발장, 주방가구 등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대상 시설	적용대상 규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연면적 3,000㎡ 이상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국공립 · 법인 · 직장 · 민간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지하)
목욕장	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영화상영관	실내에 위치한 모든 영화상영관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옥내시설
PC방	연면적 3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돌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실내 공연장	객석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꼼꼼한 제도개선 깐깐한 사전관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생활환경과 Tel (044)201-6797, 6798 Fax (044)201-6802 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Tel (032)560-8310, 8324 Fax (032)560-7097 www.nier.go.kr